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기후변화 대응\*

- Basic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and Coping with Climate Change -

장 우 (연세대 법학연구원)

Jang, Wook / Yonsei University, Institute of Legal Studies

- I. 입법배경
- II.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입법과정
- III.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주요 내용 및 분석
- IV. 맺는 말

### 국문초록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체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한편 경제와 환경의 선순환 구조를 통한 새로운 신성장동력으로서의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이 법은 2010년 4월 14일부터 발효하였다. 이 글에서는 그동안 이 법의 입법과정에서 일어난 수차례의 공청회 쟁점사항들과 환경단체를 비롯한 각 계의 입장들을 재정리하고, 입법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녹색성장 관련 법제를 제·개정함에 있어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회 각 영역의 갈등 해결과 통합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입법평가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 글에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는 한편, 헌법을 비롯한 지속가능발전법, 경제법, 환경법 및 기타 다른 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새롭게 발효되는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현행 기본법 하에서의 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고, 녹색성장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행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09-413-B00026)

정위원회로의 전환을 제안하였다.

### Abstract

Korean Government enacted Basic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to foster green industries as a new motive power through a virtuous circle structure between economy and environment, while it would contribute to the international efforts to cope with climate change and the Act became effective on Apr 14 2010. In this article, I rearranged the issues of several public hearings and opinions of each field including environmental groups during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is act and examined problems of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is act. Furthermore I suggested that the evaluation of legislation should be fully exploited to give justification and to settle and integrate conflicts of people in societies.

In this article, I examined relations between i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ct, economic laws, environmental laws and any other law and analyzed its major contents while I found its legal character. Under the Basic act, I found the function and role of the Committee on Green Growth and suggested that it would be changed into an administrative commission to carry out green growth policies effectively.

(주제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Basic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기후변화대응(coping with climate change), 입법과정(legislative process), 입법평가(the evaluation of legislation), 녹색성장위원회(the Committee on Green Growth)

### I. 立法背景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자연재해의 심각성을 국제사회가 인식하고 이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노력들이 기후변화협약체결로 이어지게 되었다. 1972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인간과 환경에 관한 스톡홀름 선언’을 선택함으로써 환경문제가 전지구차원의 문제로 인식되게 되었지만 본격적인 국제대응책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92년 유엔기후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UNFCCC)이 체결되면서부터 이다. 이 협약은 2010년 현재 194개국이 가입한 상태이며 이후 교토의정서의 모태가 되었다.

이 협약에서는 협약당사국들에게 기후변화 원인인 지구 온난화를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시키면서 이를 실천하기 위한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저감하는 산업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조치를 포함하지는 않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환경산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1997년 교토의정서를 체결하게 되었다. 교토의정서에서는 보다 실효성있는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별로 차등화된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우선적으로 선진국에 대해 감축의무를 부과하고 개도국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였다.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관한 교토의정서<sup>1)</sup>에 의하면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부속서 I 국가의 경우 제1차 공약기간(2008~2012)동안 1990년 대비 5%이상을 감축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며 그 실천 방안으로서 탄소배출권 거래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부속서 I 에 속하지 않은 개도국의 경우에 청정개발체계(Clean Development Mechanism)수립을 통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교토의정서 제1차 이행기간이 완료하는 시점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체제(포스트 교토체제)에서는 교토의정서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비대상국에게 감축의무를 부과할 것인가가 주요한 논제가 되었다. 그 후 2007년 발리에서 개최된 제1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발리이행계획(Bali Action Plan)을 채택하여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단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하였다. 발리이행계획에 의하면 개도국은 온실가스 배출 억제에 대해 축정보고 및 확인가능한 조치를 취하고, 선진국은 개도국에게 온실가스 배출억제기술을 이전하고 금융지원 및 투자확대를하기로 합의했다. 2년간 진행된 당사국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2009년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제15차 당사국 총회에서 지구 온도 상승을 2℃ 이하로 억제한다는 목표하에 선진국의 경우에는 2020년까지 정량화된 경제전반적 배출목표를 제출하고, 개도국의 경우에는 각 국가별로 적절한 감축목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약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자국의 국내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는데 유럽 각국, 미국, 일본, 호주 등 기후변화와 에너지에 관한 각종 법안 및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들 법안의 핵심적 내용은 배출규제 및 거래제 도입의 강화와 관련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프랑스, 영국, 일본, 호주의 경우에는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한 선도적이고 선제적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비부속서 I 의 국가로 분류되어 감축의무 대상국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7위이며, 주요국가의 이산화탄소배출량의 1990년과 2005년 사이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그 변화율이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음을 감안할 때<sup>2)</sup>, 포스트교토체제 이후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의

1) 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Article 3.1

2) 김종백·정병걸, 녹색성장과 환경, 경제의 통합, 정부학연구 제15권 제2호(2009), 57쪽 <표 2> 참조.

무수행에 강도 높은 국제사회의 압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 배경과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국제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08년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새로운 국가발전 원동력으로서 녹색성장을 천명하고, 이어 G8 확대정상회의에서 지구의 기후변화대응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후 2009년 1월5일 ‘녹색성장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훈령에 근거하여 녹색성장위원회가 설립되고 녹색성장기본법을 입법예고하였다<sup>3)</sup>. 이하에서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입법과정에서의 논의들과 그 쟁점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 II. 貯炭所綠色成長基本法の 立法過程

### 1. 立法經過

최근 2012년 이후 기후변화 협약체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은 관련 법령을 제정·비 또는 기후변화관련 대응법의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sup>4)</sup>.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9년 8월 29일 정부입법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배출권거래제 도입, 온실가스 통계시스템 구축 및 온실가스 배출사업자의 보고의무 등을 규정한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지만 제정작업이 중단되었다. 그러나 2008년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녹색성장을 국가의 기후변화 및 성장의 기본전략으로 천명한 후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의 내용을 대체 또는 보완하는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각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초안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계속 해왔다. 이에 2008년 12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안)의 초안이 마련되고, 관계 부처의

3) 처음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 권한도 없는 기관이 녹색성장위원회가 법안을 입법예고하고 위원회의 설립 근거규정도 대통령훈령에 의거하는 등 법치행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학계에서 강하게 제기되자 2009년 2월 16일 다시 국무총리 이름으로 입법예고를 하였다.

4) 영국의 경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08년 Climate Change Act를 통과시켰으며 세계 최초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적 의무화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그린벨 환경법을 법률로서 채택하고 2020년까지 탄소부문에서 유럽내 가장 효율적인 경제 건설을 목표로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설정했다. 일본의 경우에는 2020년 배출량 목표달성을 위한 지구온난화방지법안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를 25%삭감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호주는 2007년 국가온실가스·에너지보고의무법(National Greenhouse and Energy Reporting Act)를 통과시키고 일정기준 이상 온실가스 배출설비는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사용자료를 외부검증을 통해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기후변화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법안들이 계속해서 제안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포괄적인 기후변화법안으로 The American Clean Energy and Security Act of 2009가 하원을 통과하여 상원에 계류중에 있다. Waxman-Markey 법안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배출권총량제한방식을 채택하고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단계적으로 늘여갈 것을 규정하고 있다(조현진,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대응책, 한국탄소법학회창립학술대회 자료집, 2010. 2, 61~69쪽).

협의를 거쳐 2009년 1월 15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입법예고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산업계와 간담회, 공청회를 거쳐 2009년 2월 27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안을 국회에 상정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2008년 11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의원입법으로 기후변화대책기본법 내지 동일한 입법취지를 가진 법안들이 발의된 바 있다<sup>5)</sup>. 이들 각각의 법률안들이 제282회 국회(2009. 4. 14) 제5차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에서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쳤고, 제284회 국회(2009. 9. 25)에서는 이상의 4건의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되게 되었다. 2009년 11월 5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4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다. 2009년 11월 9일 제284회 국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안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안을 대안으로 받아들여기로 하고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2009년 12월 29일 비로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은 정부를 거쳐 2010년 1월 13일 공포되었고,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제정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각종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및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대책을 ‘녹색성장 국가전략’이라는 큰 틀을 구심점으로 하여, 유기적으로 연계·통합하여 추진함으로써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서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창출, 녹색건축물 및 녹색생활의 정착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녹색성장국가 전략을 수립·심의하는 녹색성장위원회의 설립 등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다.

## 2. 法案 制定時의 爭點

### (1) 정부측 입장<sup>6)</sup>

최근 세계 각국은 과도한 화석연료의 사용에 따른 지구온난화의 가속화로 인한 환경위기와 자원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탄소의존도를 줄이고 새로이 재편되는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제적 흐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정책, 녹색경제, 기술산업, 지속가능발전 등 녹색성장과 관련된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입법 요구들이 있었고, 특히 정부 각 부처에서 개개의 법률들을 통해 시행되고 있는 기후 변화와 지구온난화, 신·재생에너지 및 지속가능발전 대책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 통합하여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를 연

5) 2008년 11월 7일 김성곤 의원 등 33인이 기후변화대책기본법을, 그해 11월 25일에는 배은희 의원 등 21인이 기후변화대응 및 온실가스감축지원에 대한 기본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2009년 1월 14일 이인기 의원 등 25인의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을 발의하였다.

6) 제282회 국회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국회사무처, 2009. 4. 20. 참고.

계할 수 있는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그 제정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취지에서 제정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경제와 환경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그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 국제적 기준이 반영된 입법을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본다.

### (2) 산업계 입장<sup>7)</sup>

산업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 비전 및 전략에 찬성을 하면서 외부적으로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정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입법과정에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포함되어야 한 내용 및 규제와 관련해서는 우려 내지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다소비 업종 중심의 제조업 비중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기 때문에 총량제한 방식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것은 산업경쟁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재고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산업계가 자율적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감축정책과 지원정책이 반영될 것을 요구하였다.

그 근거로 현재 개도국 중에서 입법을 추진한 국가는 전세계적으로 없으며, 부속서 I 국가 중에서도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별도의 입법을 추진한 국가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든다<sup>8)</sup>. 따라서 우리나라도 일본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강제성격이 아닌 자발적 방식을 명문화하여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 (3) 시민단체의 입장<sup>9)</sup>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한 입장은 녹색성장이라는 미명하에 4대강 정비사업으로 포장한 한반도 대운하, 핵산업 활성화, 물 산업 민영화, 국가기반 시설에 대한 민영화를 위한 사업에 불과하다고 보고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우리 사회가 저탄소 녹색성장이 무엇인지 사회적 합의가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 절차를 통과의례로 여기고 짧은 기간에 급속하게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다음의 근거하에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제정을 반대하였다.

첫째, 본 법은 기본법의 성격에 맞지 않게 구체적인 사업을 적시하고 있어 해당 법률과의 관계설정을 애매하게 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의 기능 및 역할에 혼선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입법예고는 중앙행정기관이나 행정위원회에서 하도록 규정하

7) 이종인, 국회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공청회 진술자료, 2009. 1. 참고.

8) 현재 총량제한에 의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국가는 EU회원국인 영국, 독일, 이탈리아 밖에 없다.

9) 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한 시민단체의견서, 2009. 1. 28. 참고.

고 있다. 그럼에도 입법예고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녹색성장위원회가 입법예고를 함으로써 입법예고의 정당성과 효력에 문제가 있다.

셋째, 사회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여전히 논쟁이 되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 물산업 민영화, 핵산업 합리화 내용 등이 법안에 포함시킴으로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넷째, 본 법안의 정책목표와 이념은 개별 법률의 개정을 통해서 충분히 일관성을 추구할 수 있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법과 같은 범위의 법을 제정하는 것은 형식의 남용이다.

다섯째, 본 법안이 담고 있는 내용과 국가정책 전반에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너무 급박하게 추진하는 경향이 있다.

### 3. 立法上의 問題點 및 評價

최근 시시각각으로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기존의 화석연료중심의 에너지 문제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환경과 경제를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는 시대적 당위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입법과정을 살펴보면 녹색성장이 현재의 사회 전반의 모든 분야에 미칠 영향과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 까지 미칠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시대적 당위성만으로 지나치게 입법을 서두른 측면이 많다.

국가 경제 및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을 규정하는 입법을 함에 있어서는 산업계, 시민단체, 학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오늘날 대의민주주의하에서 한 나라의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입법과정은 민의수렴기능, 갈등해결과 통합화 기능, 정치과정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sup>10)</sup>. 민의가 충실하게 반영된 입법은 그 성립과정에서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며, 입법과정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조정·조화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를 통합하는 기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sup>11)</sup>.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경우 국민의 의견을 조정, 조율할 수 있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과정없이 정부 중심의 입법 정책은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한다는 신성장동력으로서의 녹색성장이 경제 우위적 사고가 지배하는 과거의 경제성장정책의 한 변형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가해지기도 한다<sup>12)</sup>. 특히 입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이후 합의안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한 국회회의록을 살펴보면 충분한 논의와 법안의 타당성 검증을 거쳐 입법화에 이르기 보다는 정치적 세력간의 협상 내지 거래의 산물처럼 보이기도 한다.

10) 입법과정의 기능을 갈등의 처리와 정치사회의 통합기능, 국민참여의 기회보장, 입법과정을 통한 소수자 보호로 설명하기도 한다(박영도, 입법과정의 이론과 실제, 한국법제연구원, 1994, 14~17쪽).

11) 박중희·박수철, 입법과정론, 박영사, 2006, 7~9쪽.

12) 김종백·정병걸, 녹색성장과 환경·경제의 통합 : 변환과 전환사이에서, 정부학연구 제15권제2호(2009), 60쪽.

물론 국가정책을 법제화함에 있어서 정치세력 또는 집단간의 가치관이 상이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각자의 주장 내지 의견만 내세울 뿐 조정 자체가 어려워 사회적 합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법의 실효성 관점을 중시하는 법사회학, 비용과 효용의 관점을 중시하는 법경제학의 기법을 입법에 포섭하여 입법행위의 실시, 효과에 관한 과학적 분석에 근거한 입법안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인 입법에 이를 수 있다.

입법평가 중 입법의 필요성 및 입법의 방법에 관한 확신이 부족할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사전적 입법평가이다. 사전적 입법평가는 ① 법적 규율의 조사할 때, ② 대안입법의 개발 및 개발된 대안입법의 예상결과를 사정한 후 비교적으로 평가할 때, ③ 대안입법의 합목적성을 확정할 때, ④ 최적의 대안입법을 탐색할 때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sup>13)</sup>.

### III. 貯炭所綠色成長基本法の 주요 內容 및 分析

#### 1. 法的 性格

##### (1) 헌법과의 관계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신성장동력으로서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의 육성을 통해 경제와 환경이 조화되는 자원순환형 경제구조로 나아갈 것을 표방하고 있다. 이러한 선순환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은 현세대의 안전과 자유 및 행복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안전과 자유 및 행복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 등에 따른 지구적인 환경재난에 대해 국제적 협력의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법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헌법 전문의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의 원칙으로부터 그 근거를 도출해낼 수 있다.

우리 헌법의 개별 규정으로 부터는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sup>14)</sup>, 행복추구권, 제34조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보장, 국가의 사회보장, 사회복지증진 의무, 제35조 환경권, 제119조 국민경제의 균형성장 및 안정, 경제규제 및 조정을 위한 수권, 제120조 국토·자원의 국가

13) 박영도, 입법평가의 이론과 실제, 한국법제연구원, 2007, 134쪽.

14) 환경과피에서 비롯한 생태계 위기가 격화되면서 기존의 인간중심주의 사상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다. 인권과 자연권의 조화로운 모색을 도모하기 위해 생태주의 규범론이 등장하였다.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모든 생명체에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려는 생명중심주의와 한발 더 나아가 생명이 없는 존재에게조차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려는 자연중심주의가 주장되고 있다. 인간중심주의와 생태중심주의를 결합하려는 시도로 인권을 바탕으로 한 인간중심주의 틀내에서 인간이 아닌 자연존재에게 도덕적 위상을 부여한다는 즉 인간중심주의가 중심을 구성하고 생태중심주의가 그 바탕을 이루는 이론적 구도인 생태적 인간중심주의를 주장하기도 한다(자세한 내용은 김양현, 생태적 인간중심주의의 인권과 자연권의 조화를 위한 이론들의 모색, 민주주의와 인권 제4권 제1호, 2003. 참조).

적 보호 및 균형있는 개발·이용을 위한 계획 의무, 제122조 국토의 효율적 균형 있는 이용, 개발 등과 관련한 수권, 제123조의 지역간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육성의무로부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표방하고 있는 각각의 원리 원칙들이 나온다.

기본법은 사회기반시설과 국책사업 등 우리 사회에 공공성이 보장되어야 할 분야에 민간자본투자를 보장하고 활성화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자본과 시장의 지배하에 놓이게 만들어 민주주의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sup>15)</sup>. 이러한 비판은 우리 헌법은 경제의 민주화를 위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추구한다는 것을 근거로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판례<sup>16)</sup>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라든가 시장메커니즘의 자동조절기능이라는 골격은 유지하면서 근로대중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득의 재분배, 투자의 유도, 조정 등을 시행하는 국가”라고 표방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법은 오히려 민주주의의 경제적 영역에서 본래적 원칙인 시장메커니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인지도 이해하기 힘들다. 또한 녹색성장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시장기능에만 의존하지 않고 중요한 정책 내지 기본적인 계획에 있어서는 국가가 책임과 의무를 수행할 것임을 법 전반에 표명함으로써<sup>17)</sup> 이 법이 헌법상 원칙인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기반시설이 민간의 투기자본에 의해 설립된 녹색산업투자회사에 전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 금융위원회에 관리 감독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sup>18)</sup>.

## (2) 지속가능발전법과의 관계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은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고 세계적으로도 어느 정도 정립된 개념이다<sup>19)</sup>. 지속가능한 발전은 환경적 가치, 미래지향성 및 형평성을 공통요소로 하는 것으로<sup>20)</sup> 환경가치를 중시하고 경제 등 다른 국익가치와의 실천적 조화를 꾀하면서 동시에 세대간 형평과 사회적 형평을 확보함으로써 환경과 개발을 통합시키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sup>21)</sup>. 리우 회의 이후 2002년 요하네스버그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15) ‘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2009.1.29 참조(<http://sjustice.history.com>)

16) 헌재 1989.12.22. 88헌가13,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제31조의2의 위헌심판

17)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조 내지 제5조, 제9조 내지 제11조 등 참조

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0조 이하 참조

19) 지속가능한 발전은 1992년 리우 데 자네이로에서 열린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UNCED)의 중심적 테마였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발전 이념은 이미 1972년 스톡홀름 선언과 이를 바탕으로 1972년 유엔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의 유엔총회에 대한 보고서 “우리의 공동미래”를 통해 가시화되기 시작했고, 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을 통하여 전지구적 차원의 환경보호이념으로 고양된 것이다. 리우회의 이후 UNCEP, UNDP, UNESCO 등 유엔산하기구들을 중심으로 각국의 환경정책, 환경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행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홍준형, 환경법, 박영사, 2005, 70~71쪽 참조).

20) 양병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환경적합성 평가, 환경논총(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제31권 1993, 247쪽.

21) 홍준형, 전게서, 75쪽.

지구정상회의(WSSD)가 개최되고, 이 회의를 통한 선언문에서 세계 각국은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다. 우리나라도 2007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2010년 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지속가능발전법으로 개칭되었는데, 이는 녹색성장기본법이 지속가능발전법의 기본법으로 기능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sup>22)</sup>.

그런데 녹색성장의 개념은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개념<sup>23)</sup>으로 그 의미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립된 상태는 아니지만<sup>24)</sup>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라고<sup>25)</sup> 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 개념과 구별하여 정의하고 있다<sup>26)</sup>.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실정법상 내지 협의에서의 녹색성장에 대한 정의이고 광의로 본다면 (저탄소)녹색성장이라는 개념은 지속가능성을 전제한 개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본법에서 표방하고 있는 저탄소녹색성장 정책들이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인 경우에 진정한 녹색성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27)</sup>.

따라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지속가능발전법에서 발전 내지 진화된 법으로서 별도의 법률로 규정해 둘 필요가 없다고 보인다. 현재 지속가능발전법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관

- 22)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과의 관계에 대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입안시에 기존의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의 내용을 축소하고 개정하는 사항도 담고 있으므로 녹색성장이라는 개념이 기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포섭하는 상위개념으로 설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안에서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하는 새로운 성장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보다 더 축소한 것으로 보여지가 있어 녹색성장이라는 개념을 지속가능한 발전을 포섭하는 상위개념으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함태성, 녹색성장법과 지속가능발전의 관계 정립에 관한 법적 고찰, 환경법연구, 제31권 1호, 2009, 365~372쪽).
- 23) 녹색성장이라는 용어의 기원과 관련하여 2001년 Economist지에서 처음 사용되었다고 알려지고 있으나 이를 정책목표로 구체화한 것은 2005년 3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5차 환경과 개발 장관회의(Ministerial Conference of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녹색성장이라 지칭하면서 부터이다(김유향, 기후변화법과 녹색성장법 리뷰, 의정연구 제15권 제1호, 2009, 329쪽).
- 24) 녹색성장은 탄생부터 아·태지역이라는 지역적 한계성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이론적 기반이 취약하고 여전히 개념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발전되는 개념이다 보는 견해도 있다(김성배, 녹색성장과 지방자치법제, 한국비교공법학회 제54차 학술대회 자료집(2009. 12), 157쪽).
- 25)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2조 제2호.
- 26) 녹색성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세가지 축인 경제(성장), 환경(보존), 사회(형평성, 통합) 중에서 경제와 환경의 조화만을 추구할 뿐, 사회정의의 문제나 환경 피해의 계층적, 지역적 집중 문제와 같은 사회적 측면에 대한 고려는 빠져 있기 때문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제정으로 대두된 녹색성장 개념이 이미 기존에 확립된 지속가능발전개념에서 후퇴한 개념이라는 비판이 있다(이상현, 저탄소 녹색성장의 특징과 문제점, 환경과 생명, 2008년 겨울호, 112쪽).
- 27) 지속가능발전은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이념적 측면이 강조되는 것이고, 녹색성장은 전략적이고 실천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것이라고 하기도 한다(함태성, 녹색성장기본법의 법률적 해석과 모순, 녹색없는 MB식 녹색뉴딜사업과 녹색성장기본법 진단, 한국환경회의, 2009. 2. 29쪽).

한 사항이외에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기본적 용어의 정의 규정,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추진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기본적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특별한 내용이 없다. 오히려 녹색성장기본법에서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기본 원칙 내지 계획 나아가 각 분야별 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sup>28)</sup>. 그리고 환경부 장관 하에 두도록 한 심의기관으로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경우에도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업무와 중복되거나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심의하는데 그치고 있다<sup>29)</sup>. 두 위원회의 존치는 업무의 혼선 내지 불필요한 행정인력의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에 행정비용을 줄인다는 측면에서도 두 기관을 통폐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sup>30)</sup>.

결론적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폐지하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지속가능발전법의 규정을 포함시키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드러내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라고 명칭을 개칭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 (3) 기본법과 구체화법의 성격

오늘날 수많은 개별법의 양산으로 인하여 법률이 분화, 세분화되어 복잡해진 법률체계 속에서 일정한 분야에 대해 포괄적이고 공통적으로 적용될 필요성에서 기본법의 제정이 확대되고 있다<sup>31)</sup>.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도 기본법으로서 녹색성장 관련한 현행 법령 및 향후 제·개정될 법령들을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구심점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 법에서 녹색성장과 관련한 정책의 기본 방향 내지 기본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그에 근거하여 관계 법령들이 제·개정되고 해석되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녹색성장 정책들이 상호 모순됨이 없이 통일성과 일체성을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그런데 녹색성장기본법의 경우에는 기본법이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기본이념, 원칙, 기본적인 시책 등과 관련한 사항을 넘어서 녹색성장과 관련된 가능한 많은 정책 내지 입법 사항들을 다루고자 하였다.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개별 입법에서 다루어도 좋은 사항들까지 포섭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sup>32)</sup>. 녹색성장이라는 개념은 아직 완전히 정립되지 않고 그 범위에 있어서도 유동적인 부문이 많기 때문에 이 법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들은 녹색성장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 또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녹색성장 관련 법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방형 형태로 규정하는 것도 바람직

28)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6장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 참조.

29) 지속가능발전법 제16조 참조.

30)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위원회의 고질적 문제 중 하나로 유사한 기능의 정부위원회가 많아 업무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정부위원회의 정비 등을 통해 유사한 위원회를 폐지시키거나 통폐합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김정해·조성한, 정부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대사회와 행정 제 17권 제2호, 2007. 8. 190쪽).

31) 박중휘·박수철, 입법과정론, 박영사, 2006 124쪽.

32) 예를 들면 법 제47조의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관리에 관한 사항들은 도로교통법이나 기타 관련법규의 정비시에 포함하여 규정하여도 될 것이다.

할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에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한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는 다른 외국의 입법례<sup>33)</sup>들을 보면 추상적인 기본 원칙을 규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장기적 목표 내지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입법이 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의 경우에도 장기적인 목표를 단계별로 구체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외에 법 제8조에서 ‘다른 법과의 관계에서 저탄소녹색성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직 녹색성장의 개념 정의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므로 구체적인 경우 녹색성장과 관련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어 우선 적용의 대상이 되는 법률이 무엇인지를 확정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한다<sup>34)</sup>. 또한 법적 효력과 관련하여서도 기본법이 관련 타 법률과의 관계에서 상위법으로 기능한다고 명시한다고 하고 있는데<sup>35)</sup>, 기본법은 관련분야 법률의 해석 지침 내지 기준이 되고, 향후 법률 제·개정에 있어서 입법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할 뿐 개별 법률과의 관계에서 효력적으로 우위에 서는 것은 아니다. 또한 앞으로 저탄소녹색성장 관련 법률들이 새롭게 제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 법률에 대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우선 적용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외에도 기본법은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고, 향후 제정될 개별 법률들은 기본법에 대해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므로 구체적 사항에 대해 개별 법률들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은 삭제함이 타당하고, 제8조 제2항의 저탄소녹색성장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 제·개정의 기침이 되도록 한 규정을 두는 것으로 충분하다<sup>36)</sup>.

#### (4) 경제법과 환경법 원리의 적용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공사법상의 다양한 법원리가 적용되지만 주요하게는 경제법과 환경법이 결합된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제법이란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이나 대외무역에서의 균형 그리고 이를 위한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을 국가가 개입하기 위한 법을 말한다. 오늘날 경제법의 정의를 국민경제 전체를 정당하게 질서지우기 위해 경제를 규제하는 법규범 및 법제도의 총체라고 보고 단순히 보건위생이나 치안유지, 환경보전 등을 목적으로 경제를 규제하는 법은 경제법에서 제외하고 있다.<sup>37)</sup>

이 법의 목적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저탄소녹색성장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하고 있으며, 녹색성장의 기본원칙<sup>38)</sup>이나 녹색산업, 녹색경제의 구현을

33) 앞의 각주 5) 참고.

34) 고문현, 녹색성장과 환경법제, 한국비교공법학회 제52회 학술대회 자료집(2009. 12), 51쪽.

35)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항 저탄소녹색성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36) 일반적으로 국가정보화기본법, 건축기본법, 과학기술기본법 등 다른 기본법의 경우에도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함에 기본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따라 관련 사항들을 입법할 것을 요구하는데 그치고 있다.

37) 권오승, 경제법, 법문사, 2009, 12쪽.

38)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조 참조.

위한 기본 원칙<sup>39)</sup> 뿐만 아니라 녹색성장 추진 및 저탄소사회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업 수행에 있어서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및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등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한 정부의 시책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법 제22조 제2항에서 정부는 녹색경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금융, 산업, 과학기술, 환경, 국토, 문화 등 다양한 부분을 통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함으로써 국민 경제 전체를 정당하게 질서지우기 위한 법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4항에서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저소득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 및 배려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분배를 꾀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다만 국민경제 육성의 방향이 기존의 요소투입 중심 산업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합한 산업 및 경제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탄소배출권거래제와 같은 경제규제 정책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대책<sup>40)</sup>을 마련하고 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환경법의 법원리에 근거하고 있다. 환경법의 기본원리로서 사전배려의 원칙, 존속보호의 원칙, 원인자부담의 원칙, 협력의 원칙들을 들고 있다. 먼저 사전배려의 원칙이란 자연에 대한 보호를 통하여 후손들에게 한정된 자연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과 연관되어 있다<sup>41)</sup>. 기본법 제22조 녹색경제, 녹색산업 구현을 위한 기본원칙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9조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에서도 현세대 및 미래세대가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도록 하는 등 지속가능성에 근거한 개발 원칙들이 법 전반에 나타나 있다. 존속보호의 원칙은 현재상태를 악화시키는 환경침해를 제거하고 환경을 현재의 상태대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sup>42)</sup>. 기본법 제38조 기후변화대응의 기본원칙 제5호에서 대규모 자연재해, 환경상태와 작물상황의 변화에 대비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한 것은 존속보호의 원칙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원인자부담의 원칙은 환경침해에 대하여 원인을 제공하거나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한 자가 원상회복, 침해의 제거 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고, 환경부담금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sup>43)</sup>. 그런데 기본법에서는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입각해 환

39)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22조 참조.

40) 저탄소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법 제23조에서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육성·지원, 제24조 자원순환의 촉진, 제25조 기업의 녹색경영촉진, 제26조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의 촉진, 제27조 정보통신기술의 보급·활용, 제28조 금융의 지원과 활성화, 제29조 녹색산업투자회사의 설립과 지원, 제31조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제33조 중소기업의 지원, 제34조 녹색기술, 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 등의 녹색경제육성 및 지원책을 규정하고 있다.

41) 김성수, 개별행정법, 법문사, 2001, 254쪽.

42) 김성수, 전거서, 255쪽(환경보호와 다른 법익과의 적절한 형량하에 미래지향적으로 보다 유연성 있게 환경을 보호하는 사전배려의 원칙은 존속보호의 원칙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존속보호의 원칙은 사전배려의 파생원칙으로 이해한다).

43)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공동부담의 원칙이 있는데 이는 환경침해에 대하여 침해를

경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규정은 없고, 법 제46조에서 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 도입가능성을 열어 줌으로써 일정한 기준 내지 총량을 초과하는 자에 대해서 시장을 통한 비용을 지출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간접적으로 원인자부담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협력의 원칙은 환경의 보호와 이를 위한 법의 제정 및 집행과정에서 국가와 개인이 협력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특히 환경법의 영역에서 협력의 원칙은 중요한데 국가는 환경행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개인과 기업을 비롯한 다른 환경주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그들의 지식과 노하우, 자본을 활용함으로써 환경행정의 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44)</sup>. 기본법에서 많은 규정들이 협력의 원칙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우선 법 제3조 저탄소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제8호에서 국민 모두가 참여하고 모든 기관들이 협력하여 저탄소녹색성장을 구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4조 내지 제8조의 각각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은 협력의 원칙에 근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 환경규제를 함에 있어서 직접적 규제방식 보다는 자율적인 규제방식 내지 경제적 유인책을 통한 환경규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비강제적 방식에 의한 환경규제도 환경주체와의 협력을 통해 행정목적을 달성케 한다는 점에서 협력의 원칙이 적용되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법 제36조에서 환경주체가 스스로 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규제를 선호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강제적인 규제보다는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되는 규제를 도입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또한 법 제46조에서 배출권거래제 또한 시장유인적 기능을 통한 환경규제제도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 2. 법의 構成 및 主要內容

본 법은 모두 7개장의 총 64조 및 부칙 4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법은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목표, 추진전략을 포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면서 녹색경제, 녹색산업창출, 녹색산업투자회사 설립, 온실가스 감축 등 정부의 모든 정책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 (1) 총칙

총칙 제1조 목적에서 신국가 발전패러다임으로서 경제와 환경이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국가동력으로 활용하여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녹색기술’, ‘녹색산업’, ‘녹색제품’, ‘녹색생활’, ‘녹색경영’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법적으로 정의하고, 2008년 입법예고되었다 중단된 바 있

제거하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는 이에 대한 원인을 제공하는 자가 아닌 바로 일반 국민인 납세자가 된다(김성서, 전게서, 257쪽).

44) 김성수, 전게서, 258쪽.

는 기후변화대책법안과 지속가능발전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에관한법률을 참고로 하여 '지속가능발전', '온실가스', '온실가스 배출',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자원순환',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자립도'에 법적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제3조 저탄소녹색성장의 기본원칙으로서 9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정부가 기후변화, 에너지·자원문제의 해결,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할 것을 천명하면서, 시장기능을 활성화한 민간 주도 중심의 저탄소녹색성장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 국민 모두가 참여하여 녹색성장을 달성하도록 하면서 제4조에서 제7조까지 국가의 책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및 국민의 책무에 대해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제8조에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다른 법과의 관계를 규명하면서 저탄소녹색성장과 관련하여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함을 규정하고, 이후 다른 법률을 제정 내지 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근거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2) 저탄소녹색성장 국가전략

제2장에서 정부가 저탄소녹색성장 국가전략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면서 전략 수립 및 변경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모두 거치도록 하고 있다<sup>45)</sup>.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은 각각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가 있으며, 녹색성장 계획의 수립 및 변경 사실들이 궁극적으로 녹색성장위원회에 관리될 수 있도록 보고 및 제출의무를 규정하고 있다<sup>46)</sup>. 또한 중앙의 녹색성장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가, 지방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각각 추진상황을 점검 및 평가하도록 하고<sup>47)</sup>, 녹색성장위원회는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결과에 대해 정책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sup>48)</sup>.

## (3) 녹색성장위원회 등

제3장에서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심의기관으로서 녹색성장위원회를 두고,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위원회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기본방향, 전략수립·변경·시행에 관한 사항,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 법제도에 관한 사항, 국제협상·국제협력 및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제반적인 사항을 관장하도록 하고 있다<sup>49)</sup>.

45)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9조 참조.

46)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10조, 제11조 참조.

47)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12조 참조.

48)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13조 참조.

49)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15조 참조.

녹색성장위원회와 관련하여 기존의 여타의 위원회와 달리 국무총리와 저탄소녹색성장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도록 하고 있다<sup>50)</sup>. 그 외에 녹색성장 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지원을 위한 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제17조)와 녹색성장기획단(제18조)을 두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하에서도 지방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0조).

#### (4)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진

제4장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추진의 기본원칙으로서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경제체제를 구현할 것을 요구하면서 금융·산업·과학기술·환경·국토·문화 등 다양한 분야가 통합적으로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는 한편 에너지·자원 다소비형 산업구조에서 저탄소 녹색산업구조의 단계적 이완을 추구하도록 하고 있다<sup>51)</sup>. 그리고 이 장에서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육성지원(제23조), 자원순환의 촉진(제24조), 기업의 녹색경영 촉진(제25조),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의 촉진(제26조), 정보통신기술의 보급·활용(제27조), 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제28조), 녹색산업투자회의 설립과 지원(제29조), 조세제도 운영(제30조),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제31조), 녹색기술·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제32조), 중소기업의 지원(제33조), 녹색기술·녹색산업의 집적지 및 단지 조성 등(제34조),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등(제35조), 규제의 선진화(제36조), 국제규범 대응(제37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 (5) 저탄소 사회의 구현

제5장에서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기후변화대응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정보통신·나노·생명 공학 등 첨단기술 및 융합기술을 적극 개발하고 활용할 것을 천명하고, 자율적 시장거래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허용함으로써 국내외 탄소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고 있다<sup>52)</sup>. 또한 에너지 정책의 기본원칙으로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친환경 에너지 개발 및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에너지 저소비·자원순환형 경제·사회구조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sup>53)</sup>. 에너지변화대응 및 에너지정책을 장기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년간 각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sup>54)</sup>.

온실가스 감축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소비업체(이하

50)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14조 제3, 4항 참조.

51)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22조 참조.

52)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8조 참조.

53)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9조 참조.

54)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0조, 제41조 참조.

관리업체) 별로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등을 정부에 보고하고, 정보공개하도록 하고 있다<sup>55)</sup>. 이에 대해 정부는 온실가스 관련 정보 및 통계를 개발·검증·관리하기 위한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는<sup>56)</sup> 한편 온실가스 총량배출권 거래제를 포함한 배출권 거래제도를 운영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sup>57)</sup>. 그 외에 온실가스의 자발적 감축을 유도하는 온실가스 감축의 조기행동 촉진(제43조), 교통 부문의 온실가스 관리(제47조), 기후변화 영향 평가 및 적응대책의 추진(제48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입법예고 당시에는 녹색성장 정책으로서 원자력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는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게 되었고<sup>58)</sup>, 통과된 최종 법안에는 이에 관한 사항들이 삭제되었다.

#### (6)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

제6장에서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기업 및 국민이 국토, 도시계획, 건축·교통체제, 생산시스템 등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 발전과 녹색생활 내지 녹색문화가 실현 내지 정착될 수 있도록 행동할 의무를 기본적인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sup>59)</sup>. 이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제50조), 녹색국토의 관리(제51조),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물관리(제52조), 저탄소 교통체계의 구축(제53조), 녹색건축물의 확대(제54조), 친환경 농림수산의 촉진 및 탄소흡수원 확충(제55조), 생태관광의 촉진 등(제56조), 녹색성장을 위한 생산, 소비 문화의 확산(제57조),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제58조), 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제59조)을 규정하고 있다.

#### (7) 기타

제7장 보칙에서 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자료 및 정보 등에 대한 제출 요구권을 규정하고 있다(제60조), 그 외 국제협력의 증진(제61조) 국회보고(제62조), 국가보고서의 작성(제63조), 과태료(제64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부칙에서 경과 규정을 두어 2010년 4월 14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고 이 법의 제정에 따라 다른 법률들의 용어의 변경 및 개정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55)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4조 참조.

56)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5조 참조.

57)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6조 참조.

58) 이러한 시민단체의 의견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원자력을 고유가에 대비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신재생에너지로 보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손양훈, 가야할 저탄소녹색성장의 길, 디지털타임스(2008. 9. 11).

59)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9조 참조.

### 3. 기타 貯炭所綠色成長基本法の 論議事項

#### (1) 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녹색성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 위원회의 행정기관으로서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무엇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행정작용법적 관점에서 행정청이라 함은 국가의사를 결정하여 이를 자기의 이름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한다. 행정청에는 독립제 행정청으로 장관, 처장, 청장 및 외국(外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권한의 위임을 받은 행정기관이 있고 합의제 행정청으로 토지수용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통화위원회 등이 있다. 즉 위원회 중 의사를 결정하여 그 결정된 의사를 자기의 이름으로 대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위원회만이 행정청이 되고, 대외적 표시권이 없이 심리권이나 의결권만을 갖고 있는 위원회는 행정청이 아니다<sup>60)</sup>. 녹색성장위원회는 국가의사를 결정하여 이를 외부에 표시할 권한은 없다는 점에서 행정청은 아니며, 행정관청적 성격을 갖는 행정위원회도 아니며 자문위원회에 속한다. 즉 녹색성장위원회는 녹색성장 국가전략 수립 및 변경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와 함께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녹색성장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관이다<sup>61)</sup>. 또한 녹색성장위원회는 녹색성장국가전략 및 추진계획의 점검 및 평가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sup>62)</sup> 자문기관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대통령 소속의 자문위원회의 설치 근거는 대통령령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거나 국가의 중요 정책을 사전 심의, 자문하는 등 대외적인 영향력이 큰 경우에는 개별 법률에 그 설치 근거를 두고 있다<sup>63)</sup>. 저탄소녹색성장은 신성장동력으로 현재 및 미래의 국가의 중요한 정책 지표로서 역할을 담당할 것이기 때문에 녹색성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도 당연직 위원장으로 국무총리와 법 제14조 제4항 제2호의 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공동으로 맡도록 한 취지는 내각의 조정역할을 담당하는 국무총리의 역할과 녹색성장이 국민과의 소통과 협조를 통해 완성할 수 있다는 의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한다<sup>64)</sup>. 그러나 녹색성장위원회는 심의기관에 불구하고 위원

60) 박근성, 행정법론(하), 박영사, 2006, 9쪽.

61)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9조 제3항 참조.

62)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13조 참조.

63) 김정해·조성한, 정부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대사회와 행정 제17권 제2호, 2007, 193쪽.

64) 저탄소녹색성장 법안을 제안 당시 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이 공동으로 담당하도록 한 취지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안, 국무총리실, 2009).

장이 녹색성장관련 정책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권을 행사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면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녹색성장위원회가 녹색성장과 관련한 환경, 교육, 문화, 과학기술, 국토개발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있음에도 집행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행정 각 부처에서 녹색성장 관련 정책을 수행함으로써 정책집행에 있어서 업무 충돌 등 부처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녹색성장이 장기적으로 추진할 정책이기 때문에 정권의 지속성을 넘어서 정책의 지속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녹색성장정책을 책임지고 맡을 녹색성장부서를 창설하여 윈스톱형 계획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sup>65)</sup>.

생각건대 세대를 아우르는 국가적인 녹색성장 정책을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한편 정권을 넘어서 정책의 지속성 유지를 위해서도 의사를 결정하고 대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행정관청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현재 녹색성장위원회는 실제로 단순한 자문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넘어 녹색성장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 준입법 및 준사법적 기능을 가진 행정위원회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

## (2) 배출권거래제의 도입

최근의 국제 기후 협상 동향을 보면 선발개도국의 경우 교토의정서와 달리 새로운 인센티브 방식의 국가목표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예를 들면 서발개도국의 경우 국가 전체 또는 부분단위에서 온실가스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초과달성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초과삭감분을 국제탄소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인센티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벌칙이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개도국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인센티브 목표와 같은 정책수단이 적용될 경우 비록 강제적인 배출감소의무가 없더라도 해당 국가는 강제적 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총량적 관리방식 도입을 통해 국가 혹은 부문 단위의 감축정책을 도입할 유인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sup>66)</sup>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현재의 교토의정서 하에서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부속서 I의 국가는 아니지만 2013년 이후에는 온실가스 총량적 규제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고, 국제 탄소 시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배출권거래제를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서는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며<sup>67)</sup>, 도입되는 배출권거래제 방식과 관련해서 배출총량규제 제도를 포함한 기타 국

65) 천대윤, 녹색성장정책의 과제와 전략에 관한 소고-뉴스매체에서 언급된 쟁점들을 중심으로 - 2009한 국정학회 하계학술대회 자료집, 260쪽.

66) 김용진,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의 도입방향, 환경법 연구 제30권 제2호, 377쪽.

67)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6조 제1항 참조.

제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라고 하고 배출권거래제의 방식 및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제정을 통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sup>68)</sup>.

현재 배출권거래제는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허용권거래(allowance - based system)와 삭감인증권거래(Credit - based system)으로 나누어 진다. 배출허용권 거래는 오염량에 대한 총량적 관리 목표를 설정한 후 1회에 한해 사용할 수 있는 배출권을 거래하는 Cap - and - Trade 방식으로 배출총량에 대한 직접관리 수단이다. 삭감인증권거래는 일정한 설비 개선을 통해 기준배출 대비 배출량을 감축하는 경우, 그 추가 감축량에 대해 거래하도록 하는 것이다. 배출권 거래의 경험이 풍부한 미국의 경우 삭감인증권거래에서 자유로운 거래방식인 배출권허용거래로 전환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총량관리경험이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배출권 도입 초기에는 삭감인증권 거래 형태의 단순한 제도를 도입하고 일정 정도의 경험 축적이 이루어진 후 전면적 배출권 허용거래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의견이 있고<sup>69)</sup>, 또한 산업계를 중심으로 배출권총량규제가 아닌 자발적인 방식에 의한 배출권거래제<sup>70)</sup>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수질 오염총량관리제가 3대강 유역에 이미 의무제를 실시하고 있고, 2008년 부터는 수도권 대기 오염물질 총량규제 및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등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하여 부분적으로 총량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하여 총량 규제 방식이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 있고, 배출권거래제도는 기본적으로 총량규제를 전제로 하는 제도임을 생각할 때 총량규제방식의 조속한 도입을 통해 오염물질을 적극적으로 유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든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이 주어진다면 그에 따라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 계획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절하고 시설 등에 투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IV. 맺는 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기본법임에도 불구하고 개별 입법에서 다루어 저야 할 사항들까지 포함하고 있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법적 우선순위를 규정하는 등 문제점이 있지

68)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6조 제2, 4항 참조.

69) 김정인, 박창원, 배출권거래제의 시험도입 및 운영방안, 자원 경제 연구 제10권 제1호(2001), 77쪽.

70) 일본의 자발적 배출권 거래제(Japanese Voluntary Emissions Trading System : J-VETS)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목표보유참가자와 거래참가자 두종류로 나누어 진다. 목표보유참가자란 일정량의 배출삭감을 약속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온실효과가스의 배출을 억제하는 시설도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자이다. 목표달성을 못했을 경우 특별한 벌칙은 없고 정부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거래참가자란 배출권의 거래를 목적으로 하고 등록부에 구좌를 개설하여 거래하는 자로 설비보조를 받는 일 없이 기준 연도 배출량에 비해 2009년도에 적어도 1%이상의 배출삭감을 약속한 사업장이 이에 해당한다.

만 온실가스 등으로 인한 기후변화의 국제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본 전략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천명하고 국가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목적과 기본 이념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입법의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고, 화석연료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요소투입형 중심의 산업에서 탈피하여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른 산업육성을 국가의 중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지향하고 있는 목표가 경제와 환경의 선순환 구조를 통한 성장을 표방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서 보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보다는 경제발전 또는 경제육성정책을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환경단체 등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녹색의 탈을 쓴 경제육성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본법의 하위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기후변화의 주원인으로 지목된 온실가스 감축 및 관리를 위한 조치들이 실질적으로 담보될 수 있도록 구체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녹색성장기본법의 취지하에 배출권거래제를 비롯한 기후변화 대응조치들이 구현될 구체화 법률들에서도 경제적 논리 또는 정치적 타협으로 인해 형해화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의 영향의 지역내, 지역의 다양한 환경적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지만 세대 간 형평성의 문제는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보호적 조치에는 소홀한 측면이 있어 왔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경우에도 지속가능성의 주요한 요소 중 형평성 측면의 고려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즉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등에서 지구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형평성에 관한 분명한 논의를 담고 있는데 반해<sup>71)</sup>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지속가능발전법 제2조에서 지속가능성의 정의만을 인용하고 있을 뿐 세대간 형평성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루고 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녹색의 탈을 쓴 성장기본법이라는 오명을 벗고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아우르는 진정한 의미에서 기본법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지역간 지역내 형평성, 세대간 형평성을 실현하는 내용이 보다 구체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투고일 : 2010. 5. 5 / 심사일 : 2010. 5. 8 / 확정일 : 2010. 5. 17)

71) 기후변화협약 제3조 제1항은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편익을 위해 형평성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공통적이지만 차별적인 책임과 각국의 능력에 따라 기후체계를 보호해야 한다. 따라서 선진국 당사국들은 기후변화를 억제하고 해로운 효과를 제어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천명하고 있다.

참 고 문 헌

- 권오승, 경제법, 법문사, 2009.
- 김성수, 개별행정법, 법문사, 2001.
- 박종희·박수철, 입법과정론, 박영사, 2006.
- 박영도, 입법평가의 이론과 실제, 한국법제연구원, 2007.
-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6.
-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2010.
- 홍정선, 행정법원론(하), 박영사, 2010.
- 홍준형, 환경법, 박영사, 2005.
- 고문현, 녹색성장과 환경법제, 한국비교공법학회 제52회 학술대회자료집, 2009. 12.
- 길종백·정병걸, 녹색성장과 환경·경제의 통합, 정부학연구 제15권 제2호, 2009.
- 김성배, 녹색성장과 지방자치법제, 한국비교공법학회 제54차 학술대회자료집, 2002. 12.
- 김성배, 배출권거래제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공법연구 제38집 제1호 제2권, 2009.
- 김양현, 생태적 인간중심주의 인권과 자연권의 조화를 위한 이론틀의 모색, 민주주의와 인권 제4권 제1호, 2003.
- 김유향, 기후변화법과 녹색성장법 리뷰, 의정연구 제15권 제1호, 2009.
- 김정해·조성한, 정부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현대사회와 행정 제17권 제2호, 2007. 8.
- 손양훈, 가야할 저탄소녹색성장의 길, 디지털타임스, 2008. 9.11.
- 양병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환경적합성 평가, 환경논총(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제31권, 1993.
- 이상현, 저탄소녹색성장의 특징과 문제점, 환경과 생명, 2008 겨울호.
- 이재협, 녹색성장기본법의 친환경적 실현을 위한 법적 수단, 환경법연구 제31권 제1호, 2009.
- 이종인, 국회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공청회 진술자료, 2009. 1.
- 조현진,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대응책, 한국탄소법학회창립학술대회 자료집, 2010. 2.
- 한 철, 환경규제페러다임의 전환-기업법적 관점에서, 집문당, 2007.
- 함태성, 녹색성장기본법의 법률적 해석과 모순, 녹색없는 MB식 녹색 뉴딜 사업과 녹색성장 기본법 진단, 한국환경회의, 2009. 2.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The Bali Road Map : Key Issues Under Negotiation, UNDP Environment & Emergency Group(<http://www.undp.org/climatechange>).